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등급 축소 및 명칭 변경

- 1) 성능 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인증 등급의 명칭을 변경함(별표 1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등급	반복재현성	상대정밀도	자료획득률	정확도	결정계수
1등급	80% 초과	80% 초과	80% 초과	80% 초과	0.8 초과
등급 외	80% 이하	80% 이하	80% 이하	80% 이하	0.8 이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증등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‘2등급’ 또는 ‘3등급’으로 판정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이 규정의 ‘등급 외’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	개정안					
별표 1						별표 1					
2.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.						2. 성능인증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.					
등급	반복재현성	상대정밀도	자료획득률	정확도	결정계수	등급	반복재현성	상대정밀도	자료획득률	정확도	결정계수
1등급	80% 초과	80% 초과	80% 초과	80% 초과	0.8 초과	1등급	80% 초과	80% 초과	80% 초과	80% 초과	0.8 초과
2등급	70% 초과	70% 초과		70% 초과	0.7 초과	등급 외	80% 이하	80% 이하	80% 이하	80% 이하	0.8 이하
	80% 이하	80% 이하		80% 이하	0.8 이하						
3등급	60% 초과	60% 초과		50% 초과	0.6 초과						
	70% 이하	70% 이하		70% 이하	0.7 이하						
등급 외	60% 이하	60% 이하	80% 이하	50% 이하	0.6 이하						